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4 선고 2021가단105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9,704,924원 및 그 중 49,461,007원에 대하여 2020. 12. 26.부터 2021. 3. 24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